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3. 5 선고 2023가단2820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. 23.

판 결 선 고 2024. 3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'3층' 도면 표시 ㄱ,ㄴ,ㄷ,ㄹ,ㅁ,ㅂ,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C호) 부분 23.4㎡를 인도하고,
나. 2023. 3. 15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주식

별지